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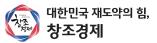


(27872)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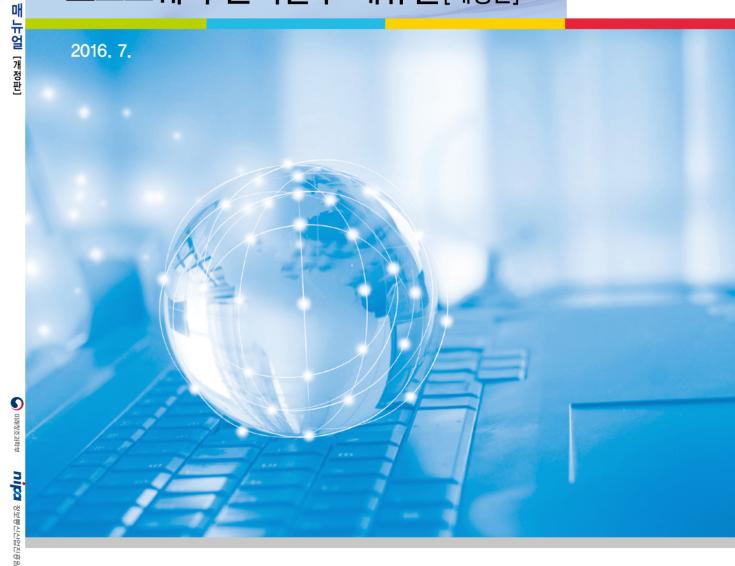
Tel: 043, 931, 5353 Fax: 043, 931, 532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http://www.nipa.kr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swhelp@nip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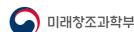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매뉴얼[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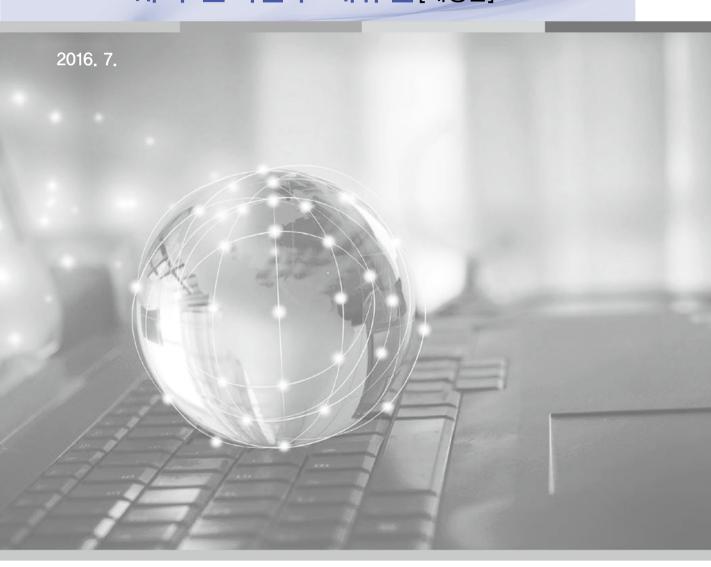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매뉴얼[개정판]





제1장 SW 분리발주 제도 개요	0
1.1 용어 설명	0
1.2 SW 분리발주 정의	0
1.3 분리발주 대상 사업 및 SW	0
1.4 분리발주 제외 기준	0
1.5 분리발주 업무처리 흐름도	1
1.6 분리발주 계약정보 등록	1
1.7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BMT)	1
제2장 SW사업 단계별 업무 절차	10
2.1 사업계획 단계	1
2.1.1 SW사업 총 규모 산정	1
2.1.2 소요 SW품목 리스트 작성	1
2.1.3 적정 사업기간 산정	2
2.1.4 BMT 사전협의	2
2.2 발주 단계	2
2.2.1 제안 요구사항 문서화	2
2.2.2 특정규격 및 과도한 요구사항 등 불공정한 사항 명시 제외	2
2.2.3 분리발주 대상 SW 여부 확인	2
2.2.4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	2
2.2.5 조달청 제외사유 사전 검토	2
2.2.6 분리발주 대상 SW 발주방법	2
2.2.7 경쟁입찰 시 SW 분리발주 유의사항	2
2.2.8 SW 분리발주 시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순서	2
2.2.9 사업자 선정 절차	2
2.2.10 분리발주 특성을 반영한 상호협력계약 체결	3
2.2.11 기타	3

2.3 계약 단계	36
2.3.1 경쟁입찰을 통한 공급자 선정	36
2.3.2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한 공급자 선정	38
2.3.3 수의계약을 통한 공급자 선정	39
2.3.4 GS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공급자 선정	39
2.3.5 SW 분리발주 계약정보 등록	39
2.4 사업관리 단계	41
2.5 인수 단계	43
2.6 유지관리 단계	45
(붙임)	47
1. SW 품목 분류체계	48
2. SW 분리발주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영사항	49
3. SW 분리발주 사업에서의 BMT 절차 및 방법	57
4. 제안요청서(일괄발주 / 분리발주 사업 예시)	59
5. 상호협약서 (예시)	61
6.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예시)	63
7.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65
8. 제외사유 검토요청 체크리스트 (조달청 서식)	66
9.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조달청 서식)	67
10.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 의결서 및 결과서 (조달청 서식)	68
11.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70
1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71
13.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72
14.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75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제1장 SW 분리발주 제도 개요

- 1.1 용어 설명
- 1.2 SW 분리발주 정의
- 1.3 분리발주 대상 사업 및 SW
- 1.4 분리발주 제외 기준
- 1.5 분리발주 업무처리 흐름도
- 1.6 분리발주 계약정보 등록
- 1.7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BMT')



제1장 SW 분리발주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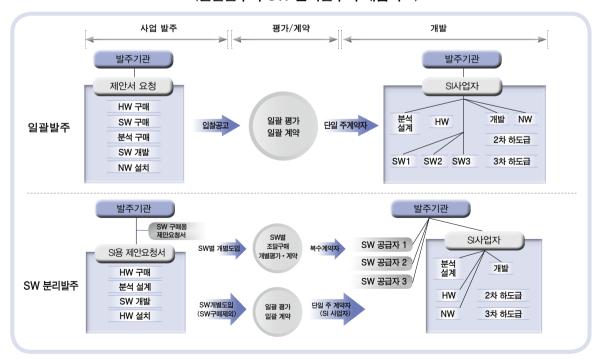
1.1 용어 설명

- '일괄발주'는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을 추진할 때 하드웨어(이하 'HW') 구매, 상용SW 구매, SW개발 및 시스템 통합 등 모든 과업을 함께 발주하는 것을 말함
- '시스템통합'은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여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함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시스템 구성요소들의 통합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함
- 'SW공급자'는 SW개발, 패키지SW, 솔루션 등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함
- '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 및 SW공급자 모두를 말함
- '발주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을 말함

1.2 SW 분리발주 정의

• SW사업을 일괄발주하는 형태에서 SW구매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조달구매 등 포함)하고 평가 · 선정, 계약, 사업관리 등을 실시하는 제도

〈일괄발주와 SW 분리발주의 개념비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4조(발주준비)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적용하여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발주 · 계약하여야 한다.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II. 사업유형별 지침 - 10. 정보화 관련 예산 - 2. 세부지침 - 라. 기타 참조)

(2) 정보화사업 발주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정보화사업 발주시에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 단, 총 사업규모나 SW의 가격에 관계없이 GS(Good Software) 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SW는 분리발주할 수 있다.

1.3 분리발주 대상 사업 및 SW

- 1차 조건: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의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VAT 포함)인 사업
- 2차 조건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가 포함된 경우(5천만원 미만 포함)
- SW가격이 단일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의 다량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고. SW품질인증 (GS) · CC · NEP · NET 국가인증을 획득한 SW 또는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가 포함된 경우
 - ※ 1차 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 사업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3조(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①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는 제2조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축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제품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 3.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CC)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전자정부법」제56조에 따른 국가정 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제품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 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1.4 분리발주 제외 기준

-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로 인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 SW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조달 발주의 경우, 제외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조달청장 사전검토 필요)
-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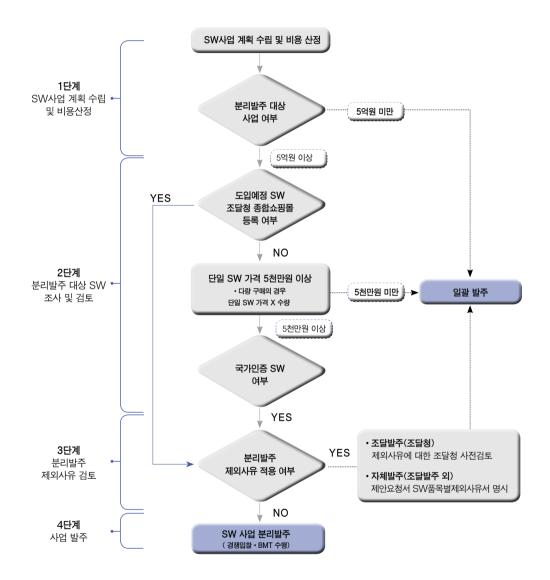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 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5 분리발주 업무처리 흐름도



- 1단계: SW사업계획 수립 및 비용 산정
 - SW사업 총 사업규모(HW·SW 도입가격. 응용SW 개발 및 시스템 통합 비용 등) 산정 후 분리발주 대상 SW사업기준 해당여부 확인(5억원 이상)
 - •소요 SW품목 리스트(품목, 추정가격 등) 작성

- 2단계 : 분리발주 대상 SW 조사 및 검토
 - 소요 SW품목 리스트(품목, 추정가격, 국가인증, 조달등록 여부 등) 작성
 - 소요 SW 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여부 조사
 - 소요 SW 품목이 국가인증 획득 여부 조사
 - 분리발주 대상 여부 확인
- 3단계 :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
 -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
 - 정보시스템 통합 불가능 또는 현저한 비용 상승
 -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
 - 현저한 비효율
 - 조달발주(조달청)하는 사업의 경우 제외사유 적용 시 조달청에 사전검토 요청
- 4단계 : 사업발주
 - SW 분리발주 사업 및 본(통합) 사업의 발주 순위 결정
 - 분리발주 대상 SW 발주방법(경쟁 입찰공고, 조달구매, 수의계약, GS 우선구매 등) 결정
 - 경쟁입찰을 통한 분리발주 대상 SW 구매 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범 (BMT)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

1.6 분리발주 계약정보 등록

- 발주기관은 분리발주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시스템 (Software industry Information Total system, 이하 SWIT)에 등록해야함
- 계약정보 등록 방법은 SWIT의 'SW 분리발주 관리' 메뉴 중 '계약정보 입력 안내' 참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분리발주 계약정보 등록)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1.7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BMT')

1.7.1 BMT 개요

- 발주기관은 경쟁입찰로 분리발주 대상 SW를 구매하려는 경우 BMT를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반영(전부 또는 일부)
 - ※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동일한 SW제품에 대해 이미 BMT를 받은 결과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음

1.7.2 BMT 대상 및 제외기준

- BMT 대상
-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려는 분리발주 대상 SW 중 SW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워(VAT 포함) 이상인 사업
- BMT 제외 기준
- 분리발주 대상 SW 중 SW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VAT 포함) 미만인 사업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구매
- 소규모 사업으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지정시험기관*의장이 협의 후 미실시 가능
- ※ 지정시험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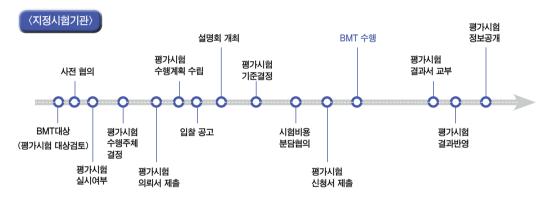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 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시험결과를 산출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 시험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0조의2(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그 밖의 공공단체 등 (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려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 대상의 세부 평가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7.3 BMT 업무 흐름도



〈발주기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0조의3(평가시험의 의뢰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평가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지정시험기관은 평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이미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평가시험을 받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시험의 의뢰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3(평가시험의 의뢰 등)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품설명서
- 2. 평가시험 참여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제2장 SW사업 단계별 업무 절차

- 2.1 사업계획 단계
- 2.2 발주 단계
- 2.3 계약 단계
- 2.4 사업관리 단계
- 2.5 인수 단계
- 2.6 유지관리 단계



제2장 SW사업 단계별 업무 절차

단계	세부절차	매뉴얼 자료
	2.1.1 SW사업 총 규모 산정	17
2.1 사업계획	2.1.2 소요 SW품목 리스트 작성	18
	2.1.3 적정 사업기간 산정	20
	2.1.4 BMT 사전협의	20
	2.2.1 제안 요구사항 문서화	22
	2.2.2 특정규격 및 과도한 요구사항 등 불공정한 사항 명시 제외	22
	2.2.3 분리발주 대상 SW 여부 확인	23
	2.2.4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	24
2.2 발주	2.2.5 조달청 제외사유 사전 검토	25
۷,۷ 2 ۱	2.2.6 분리발주 대상 SW 발주방법	27
	2.2.7 경쟁입찰 시 SW 분리발주 유의사항	27
	2.2.8 SW분리발주 시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순서	28
	2.2.9 사업자 선정 절차	29
	2.2.10 분리발주 특성을 반영한 상호협력계약 체결	33
	2.2.11 기타	35
	2.3.1 경쟁입찰을 통한 공급자 선정	36
2.3 계약	2.3.2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한 공급자 선정	38
	2.3.3 수의계약을 통한 공급자 선정	39
	2.3.4 GS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공급자 선정	39
	2.3.5 SW분리발주 계약정보 등록	39
2.4 사업관리		41
2.5 인수		43
2.6 유지관리		45

제2장 SW사업 단계별 업무 절차

2.1 사업계획 단계

발주기관은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HW, SW 및 서비스 기능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2.1.1 SW사업 총 규모 산정

- HW(네트워크 · 보안 장비, 설비 등 포함), 상용SW 도입 비용 및 SW개발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총 사업 규모 산정
 - ※ 시스템통합 시 개발 대상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상용SW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발하지 않고 SW공학센터의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을 위한 패키지소프트웨어 사전검증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상용SW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
 - SW개발 대가 산정 방법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시한 '기능점수 (FP: Function Point)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적정 예산 반영

상용SW 가격 산정

- ② 조달청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등록된 경우 제3자단가 계약된 가격으로 산정
- ※ 기능 및 가격 등이 만족할 경우, 조달구매를 통해 분리발주 추진
- (J) 견적으로 적정가격 산정
- 한 개의 상용SW에 대해 복수개의 견적을 받을 경우,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동일 기능의 상용SW에 대해 각기 다른 제조사로부터 복수개의 견적을 받을 경우, 높은 가격부터 순차 적으로 검토하여 적정가격 산정
- ※ 견적은 공급가능업체에게 당해 사업에 필요한 SW의 사전 규격서 또는 발주계획서 일부 등을 송부하여 공급가능업체가 최적의 기능제공에 따른 견적가격을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주의: SW공급자로부터 5천만원 미만으로 견적요청 금지)
- ④ 분리발주 대상 SW에 대한 다양한 거래의 실례(조달 계약정보 포함)가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적정 가격 산정
- ④ 독점 상용SW는 2개월 이상의 거래실적을 분석하여 가격 설정(단, SW의 특성상 라이프사이클이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경우 거래가격 조사기간 조정 가능)
- ☞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예정가격 산정
- 원가 조사된 금액을 예정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
- 예정가격 산정은 수량, 계약(공급)조건, 이행 기간, 라이선스 부여기간, 수급상황 등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

2.1.2 소요 SW품목 리스트 작성



①요구기능 대비 제품이 있는지 사전 검토

- 사업에 필요한 요구기능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 조달청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내 '패키지SW 제품정보시스템'
- ②기능요건을 충족하는 상용SW가 존재하는 경우, 상용SW의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응용SW 개발 ③확인된 SW들을 '소요 SW품목 리스트' 서식에 작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6조(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기준)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확인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개발 대비 비용이 높거나. 기능 구현 또는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 소요 SW품목 리스트

					구 저	77	조달		제오	사유		분리			
No	중분류	소분류	기능						추정 국가 가격 인증	등록	가격 상승	통합 불가	기간 지연	비 효율적	분리 발주 여부
1	응용 SW	일반사무용 SW	전사적 자원관리	ERP	1억원										
2	시스템 SW	미들 웨어	Web Application Server	WAS	3천만원										
3	개발용 SW	DBMS	RDBMS	DBMS	3천만원										
4	시스템 SW	유틸리티 SW	검색기능	검색엔진	6천만원										

※ 서식항목 설명

(1) 중분류: [붙임 1]의 SW품목 분류체계(48쪽 참고)의 중분류에 해당되는 사항 기재

(2) 소분류: [붙임 1]의 SW품목 분류체계(48쪽 참고)의 소분류에 해당되는 사항 기재

(3) 기능: SW의 주요기능 설명 (4) 품목: SW제품의 종류 명시

예) DBMS, 검색엔진, WAS, WEB서버, SSO 등

(5) 추정가격: SW도입 가격산정 방법에 따라 적정가격 기재, 다수제품인 경우 총 금액 기재

(6) 국가인증: 획득한 인증명(SW품질인증, CC 등)을 기재, 없는 경우 공란 처리

(7) 조달등록 :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SW품목이 있을 경우 'Y'로 기재. 없는 경우 'N'으로 기재

- ④ 필요시 작성된 '소요 SW품목 리스트'를 외부 전문가로부터 검토 받음
- ⑤ ①~④ 항목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소요 SW품목 리스트' 작성

■ 정보화전략계획(ISP)/업무재설계(BPR) 기반 분리발주 활성화 고려

- 발주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주준비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 이를 기초로 하여 SW 분리발주 품목 및 가격 산출
- 따라서. 정보화전략계획(ISP) 발주 시 요구사항에 SW 분리발주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여 발주
- ※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이후 예산 요구(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1.3 적정 사업기간 산정

- SW개발사업은 발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에 따라 SW 분리발주를 반영하여 전체 사업(일괄발주 사업, 분리발주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 ※ 세부적인 산정 방법 및 절차는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매뉴얼' 참조

2.1.4 BMT 사전협의

- 발주기관은 부리발주 대상 SW를 정한 후 해당 SW를 경쟁입찰로 구매하려는 경우 BM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매에 반영해야 함
- 발주기관은 BMT 수행 주체(직접 실시 또는 지정시험기관 의뢰). 종전 시험결과 활용여부 등을 정해야 하며.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요청
- BMT를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할 경우 사전공개 전 아래 사항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장과 협의
- 평가시험 실시 여부 및 수행주체
- 소프트웨어 품목 및 평가시험 일정
- 기능평가 또는 성능평가 등 평가방식
- 평가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
- 제안요청서의 평가시험 안내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BMT 제외 기준
- 분리발주 대상 SW 중 SW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VAT 포함) 미만인 사업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구매

- 소규모 사업으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지정시험 기관의 장 협의 후 미실시 가능
- BMT 실시 경우 제안요청서 명시사항
- BMT 실시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평가결과 활용 여부
- BMT 실시 주체(지정시험기관 또는 발주기관)
- 입찰공고 기간 이내에 BMT 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장소 및 일자 등
- BMT 계획 설명 시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SW공급자에 한하여 평가시험에 참가하도록 제한하는 경우
- BMT 비용은 발주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시험비용 분담의 필요가 있는 경우 SW공급자와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음

2.2 발주단계

제안요청서 준비 시 시스템, SW 및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사업 유형, 사업관리 전략, 지원 전략, 비용 등에 관한 SW사업의 총괄적인 요구사항을 정의

2.2.1 제안 요구사항 문서화

- 발주기관은 「발주준비」 단계에서 정한 기본적인 시스템 및 SW에 대한 요구사항과 발주사업유형에 따라 제안 요구사항 문서화
- ※ SW 분리발주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영사항(붙임 2 참조)
- 발주기관은 공급자의 제안을 받기 위해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문서화
-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SI)사업자와 SW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각각의 제안요청서에 전체 정보시스템의 구성계획과 운영환경. 일괄·분리 발주하는 대상 SW 및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에 따른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
- ※ 시스템 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 등 제안자 모두가 발주기관이 구축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여 필요한 기능과 사양을 적합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전체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성계획과 운용환경을 제시
- 본 사업에서 필요한 전체 SW품목을 '도입 방법별 SW품목 리스트'서식으로 변경하여 일괄·분리 발주. 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 제안요청서 (일괄발주/분리발주 사업 예시)(붙임 4 참조)

2.2.2 특정규격 및 과도한 요구사항 등 불공정한 사항 명시 제외

- 관련 근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제1절 총칙 (행정자치부 예규)

※ 특정규격 등 명시 사례

ı					
▶ 특정 상표 명시	SW 품목	DBMS			
	O구니하	A TILT II OOOO DDMC Fateraries Falities			
	요구사항	A 제조사 0000 DBMS Enterprise Edition			
▶ 특정 규격 명시	SW 품목	가상화 SW			
	요구사항	Bare-metal 기반의 Hypervisor 방식 제공			
▶ 특정 모델 명시					
		WAS SW			
	요구사항	WAS Standard Version ○ ○			
	표1시6	WAO Oldindard Voloioti 9 9			

※ 과도한 요구사항 등 명시 사례

▶ 사용 용도에 비해 과도한 요구사항

사용 용도	기관 홈페이지 개발 (※ DBMS의 Standard 제품으로 충족됨에도 Enterprise 제품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사항	DBMS Enterprise

▶ 필요 기능에 비해 과도한 요구사항

사용 용도	업무 중요도가 낮은 DB 구축 및 백업 SW 도입 (※ HA가 구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은 환경에서 HA의 기능을 제공하는 DBMS 요구)
요구사항	DBMS의 HA 기능 제공

2.2.3 분리발주 대상 SW 여부 확인

- 소요 SW품목 리스트에 SW품목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인지 여부 확인 ※ 조달청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등록된 품목인 경우에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 대상 SW
- 소요 SW품목 리스트 내에 품목이 국가인증(SW품질인증(GS), CC, NEP, NET)을 획득한 제품, 국가정보원 검증 · 지정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 확인
- 국가인증 획득 여부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삿기 사항을 조사한 후 아래와 같이 '소요 SW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뷰리발주 대상 여부 확인

▶ 소요 SW품목 리스트

					충저		조달		제오	사유		분리
No	중분류	소분류	기능	품목	추정 가격	국가 인증	등록	가격 상승	통합 불가	기간 지연	비 효율적	분리 발주 여부
1	응용 SW	일반사무용 SW	전사적 자원관리	ERP	1억원	SW 품질인증	N					대상
2	시스템 SW	미들 웨어	Web Application Server	WAS	3천만원	SW 품질인증	N					비대상
3	개발용 SW	DBMS	RDBMS	DBMS	3천만원	SW 품질인증	Υ					대상
4	시스템 SW	유틸리티 SW	검색기능	검색엔진	6천만원	SW 품질인증	N					대상

- ⇒소요 SW품목 리스트 검토 결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이며 국가인증을 획득한 ∏번 ERP와 ¼비 검색엔진, 5천만원 미만이나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인 3번 DBMS가 분리발주 대상
- ⇒ 따라서, 최종적으로 [T], [3], [4]번 SW가 분리발주 대상

2.2.4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

조달청을 통해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사업

구분	조달발주	
기 준	조달청을 통해 발주 또는 계약 요청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발주 · 선정 · 계약하는 경우
제외방법	① 조달청 사전협의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및 제21조) ② 분리발주 대상 SW 품목별 제외사유서 명시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	분리발주 대상 SW 품목별 제외사유서 명시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

※ 단순 링크 또는 게재만을 위한 조달청(www.g2b.go.kr) 입찰공고도 포함

- 조달발주 및 자체발주 시 제외사유 기준 및 검토 방법

-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발주 · 선정 · 계약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SW 품목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외사유의 적용 여부를 결정
- ※ 발주기관의 입찰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가 연계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을 등록하는 경우는 조달발주에 해당되지 않음

• SW 분리발주 제외사유

- ②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예) 일괄발주로 구매 시 5.000만원인 소프트웨어 도입비용이 분리발주로 구매 시 1억원 소요되는 경우

근거자료: 기획재정부 예산배정 내역서, SW공급자 또는 시스템통합사업자의 SW견적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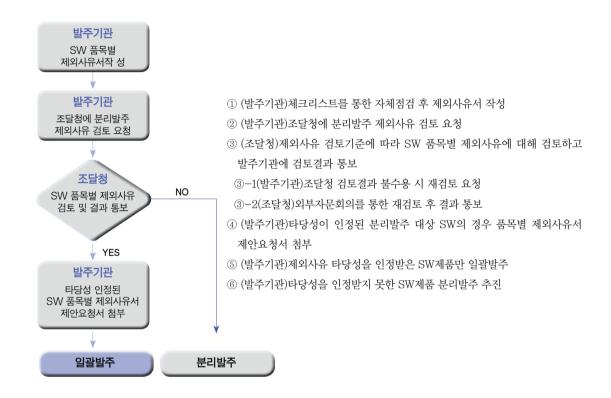
- (i) 정보시스템 통합 불가능
 - 기존 구축된 정보시스템과 연계 및 연동이 불가능할 경우

근거자료: 복수의 SW공급자의 검토의견서. 시스템통합사업자(계약상대자 아님)의 검토의견서 등

- @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
- 분리발주로 SW를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SW 직접 구입 시 커스터마이징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 내 완성되지 않는 경우
- 라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2.5 조달청 제외사유 사전 검토

• 제외사유 타당성 조달청 신청 절차



- 조달청 제외사유 사전검토 요청 시 제출자료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 신청서(공문)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 소프트웨어 가격산출내역서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붙임 9],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2호의2 서식)
- 그 외 제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6조의2(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비고 7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제외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달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 신청서(공문)
- 2.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 3. 소프트웨어 가격산출내역서
- 4.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예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수량 제외사유	
1	망중계솔루션	1식	기존 업무시스템 및 네트워크 현황 상세분석이 필요 하며 네트워크 속도 보장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작업의 난이도가 높아 분리발주 시 사업기간보다 과다소요 예상	조달청 사전검토 완료
2	MDM	MDM 1식 단말기와 시스템의 핵심 기능으로 구축되며 PTT (통화, 영상, 문자), GIS 등과 통합 Application이 신규 개발되어 연계 기술간 호환성 문제로 분리발주 시성능 및 품질 저하 우려		조달청 사전검토 완료
3	РП	1식	전용 단말기와 시스템의 핵심 기능으로 구축되며 GIS, MDM 등과 통합 Application이 신규 개발되어 연계 기술간 호환성 문제로 분리발주 시 성능 및 품질 저하 우려	조달청 사전검토 완료

※ 작성 방법

- 1) 소프트웨어 품목: DBMS, WAS, 검색엔진, DRM 등 품목명을 기재
- 2) 수량: SW공급자의 라이선스 판매정책에 따라 수량 기재
- 3) 제외 사유: 분리발주 대상 SW 고시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기술적인 내용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 4) 비고: 조달청으로부터 제외사유 사전검토 유무 등 특기사항을 기재

2.2.6 분리발주 대상 SW 발주방법

- 조달구매: 분리발주 대상 SW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 입찰공고를 통해 도입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 제3자단가 계약된 SW 구매
 - ※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SW품목이 기능 또는 가격이 만족하지 못하여 입찰공고를 통해 도입 할 경우 조달청과 사전협의 필요
- 공개경쟁 입찰 : 사업자 선정 순서에 따라 통합(본)사업과 분리발주 사업을 발주하며 커스터마이징 또는 추가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과업과 비용을 분리발주 사업에 포함하여 발주하거나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부여 가능
 - ※ 사업자간 역할분담표(붙임 6 참조)를 명확히 하여 입찰공고 또는 계약 시 SW 분리발주사업자와 시스템통합사업자와 활용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SW공급자와 계약 체결
- GS 우선구매: 분리발주 대상 SW에 대해 중소기업의 GS인증을 개발·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의 우선구매 절차를 통해 발주기관과 수의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2.2.7 경쟁입찰 시 SW 분리발주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명시 사항
-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 공급자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 후 상호협약서 제출 및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의 제출 요청(붙임 6 참조)
- 분리발주 대상 SW를 제안요청서 예시(붙임 4)의 '도입 방법별 SW품목 리스트' 양식에 맞게 도입 시기를 구분하여 작성
- BMT에 대한 수행주체(발주기관 또는 지정시험기관) 및 종전 시험결과 활용여부, BMT 설명회 개최 여부, 설명회 시 참여의향서 제출자에 한해 참가 제한하는 경우. 시험비용 부담기준 등 명시
- 제안요청서에 제외사유 명시 사항
- 분리발주 대상 SW에 대해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일괄발주할 경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서식에 따라 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제안요청서 명시 제외 사항
- 특정 상표 · 규격 · 모델 등 특정 기업에 유리한 요구사항 명시 불가
- 사용용도(시스템 규모) 또는 필수기능 이상의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여 참여의 폭을 제한하는 부당한 요구사항 명시 제외

- 공급자 선정 시 준수사항
- 사업자 선정 시 협상에 의하 계약체결방식을 우선 적용하며,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구섯
- BMT는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며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2.2.8 SW 분리발주 시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순서

- 개발의존도는 구축 예정인 응용시스템이 분리발주 예정인 SW품목으로 인해 변경되는 규모를 의미하며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
- 제품의존도는 SW품목을 응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SW의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는 규모를 의미하며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
- 개발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일괄발주 대상으로 시스템통합사업자를 우선 선정해야 하며, 제품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분리발주 대상으로 SW공급자를 우선 선정

▶ 개발 및 제품 의존도 산정 기준

구 분	개발 의존도개발	제품 의존도
상(上)	개발 시스템 설계 변경	SW품목의 Core 변경
중(中)	개발 시스템 기능 변경	SW품목의 기능 수정
하(下)	인터페이스 변경	인터페이스 또는 GUI 변경

① 시스템통합사업자 우선 선정

개발 의존도가 '중'이상인 SW품목이 다수인 경우. 개발 의존도가 '상'인 SW 품목이 한 개 이상인 경우

② SW공급자 우선 선정

제품 의존도가 높은 SW품목이 다수인 경우, 개발 의존도가 '하'인 SW 품목이 다수인 경우

③ 시스템통합 사업자와 SW공급자 동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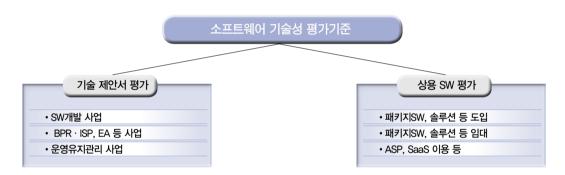
사업 수행기간이 짧은 경우, 기타 사업 수행기관에서 필요 시

2.2.9 사업자 선정 절차

-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우선 적용
- SW 분리발주 시 낙찰자 결정방법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구성
 - SW 분리발주 사업의 특성 · 목적 · 내용 · 요구 기술수준 및 상호 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대 가격비율을 90:10으로 적극 추진

(2) 기술능력평가

•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을 활용하여 설정



• 분리발주한 SW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한도를 결정하되, 분리발주 시에는 SW개발과 상용SW(도입을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도입을 구분하여 각각「SW 기술성 평가기준」별표 1과 별표 2 평가기준 활용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사용 용도	평가항목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추진전략 • 개발 방법론	• 적용기술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제약사항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일정 계획	• 개발 장비
프로젝트 지원	• 품질 보증 • 유지 보수	• 시험 운영 • 기밀 보안	• 교육 훈련 • 비상 대책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 상생협력	• 하도급 계약 적정성	

▶ 상용SW 평가항목

사용 용도	평가항목		
기능성	• 기능구현 완전성 • 보안성	• 기능구현 정확성 • 표준 준수성	• 상호 운용성
사용성	• 기능학습 용이성 •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 가능성
이식성	• 운영환경 적합성	• 설치제거 용이성	• 하위 호환성
효율성	• 반응시간	• 자원 사용율	• 처리율
유지보수성	• 문제진단/해결지원 • 백업/복구 용이성	• 환경설정 변경 기능성	• 업데이트 용이성
신뢰성	• 운용 안정성 • 데이터 회복성	• 장애복구 용이성	• 서비스 지속성
공급업체 지원	• 유지보수 지원 • 직접 생산여부	• 교육훈련 지원	• 제품 신뢰도

- SW사업 제안서 기술평가 시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5조)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규정
- ※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의 사외이사 등 이해관계인은 배제하고, 위원 위촉 시 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작성 · 제출토록 함
-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BMT 등을 기술성 평가에 우선하여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4조(평가방법 등)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체평가 항목을 기술부문과 사업관리부문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전체평가 시 그 사유를 평가위원회에 제출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설명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제3조, 제4조) 등을 활용하여 발주기관에서 기술성 평가 항목, 배점한도를 필요시 조정하여 최종 결정
- 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의 가감 조정 가능 (이 경우 그 사유를 평가위에 제출)
- ISP, SW개발사업 등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서 목차가 수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용 가능
- SW 분리발주 제품정보는 SWIT(www.swit.or.kr) 및 관련 홈페이지* 참조
- 조달청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내 제품정보 등
- BMT 수행 방법 및 기술능력 평가 반영 등
- SW 기술성 평가 이전에 현행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상용SW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활용 권장
- 지정시험기관의 BMT 결과 등은 기술성 평가에 우선하여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 SW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대상사업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 (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 2. 국가계약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3)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가격평가 실시

(4)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 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반영 가능

2.2.10 분리발주 특성을 반영한 상호협력계약 체결

- 발주기관은 입찰을 위한 제반 조건과 기술적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계약조건으로 정의
 - ①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를 기초로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 ② 발주기관은 계약에 관한 조건을 작성한 후 필요 시 내부 또는 외부의 법률적 자문을 거침
 - ③ 발주기관은 대상사업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의하여 필요 시 제안요청서에 반영

※ 계약조건을 정의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법률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용역: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 물품: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 신규 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 보완 차원에서 ERP, CRM 등 개별 시스템 기능이 강한 SW의 분리발주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활용 가능

• SW 분리발주 시 주요 계약조건

-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 및 SW공급자와 계약 체결 시 각각의 사업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각 사업범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의 가입 요청
- ①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전에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가 HW, SW사양 및 시스템 환경 등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
- ②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분리발주 SW와 시스템의 통합 업무를 부여하고 시스템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요청). 다만, 분리발주된 SW자체의 문제인 경우 SW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함
- ③ SW공급자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 검수과정 등에 필요한 SW기술지원 등 시스템통합사업자에 대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함

④ 기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상호협약서 제출 요청)토록 함

• 여러 계약상대자와 SW사업 추진 시 상호 협력 방안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의 "계약이햇상의 감독"에 따라 상호 협력을 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지체상금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항 적용
- 공동계약 유용요령을 참조하여 참여구성원 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구성원 상호간에 책임문제가 발생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특수조건)으로 명시 가능

• SW공급자에 대한 계약기간 설정과 대금지급 방법

- 일반적으로 SW의 특성상 SW공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시스템통합의 검수와 연계되므로 시스템통합사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
- 시스템통합사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납품되는 SW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SW를 분리발주하거나 SW공급자와 계약기간(공급일정 포함)을 조정
- 다만, 공급되는 SW가 성질상 분할될 수 있는 경우(기성고 인정 시) 시스템통합사업 종료시기와 관계 없이 공급된 SW의 검수 합격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설정
- 공급된 SW의 대금 지급방법
- 납품되는 SW의 완성도와 업무프로세스 독립성, 납품되는 SW 특성, 추가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금지급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되
- 선금지급은 납품 · 검수합격 후 일시 또는 분할 지급 여부, SW 및 SW사업 성격, 설치(구축)기간 등에 따라 결정
- ① SW를 구매만 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에 일시 @ 분할 구매하고. 일시 ® 분할 검수 합격 후 5일 이내 대가를 일시 ⓒ 분할 지급 가능
- 계약기간 내에 @ 일시에 SW를 납품받아 일시에 검수합격 후 일시 지급 ⓑ 일시에 SW를 납품받아 분할 검수 합격 후 분할 지급 ⓒ 분할로 SW를 납품받아 분할 검수합격 후 분할 지급
- ※ SW의 단순구매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적용 제외(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대가 지급 조항 적용)
- 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는 용역으로 보아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 가능
- 공급된 SW의 잔금은 시스템통합사업 또는 해당 SW의 검수합격일을 기준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이나 「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조건 (또는 특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 \cdot 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2.11 기타

•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되. 기급을 요하거나 추정가격이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정금액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10일전 공고 가능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2.3 계약 단계

발주기관은 분리발주 대상 SW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는 쇼핑몰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의 경우는 사전에 수립된 제안서 평가기준 · 공급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바탕으로 제안서 평가 및 공급자를 선정 하여 계약 체결

2.3.1 경쟁입찰을 통한 공급자 선정

- 입찰공고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안요청서 공고 ①발주기관은 입찰로부터 계약까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검토
 - ② 입찰 방침이 수립되면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매체에 공지
 - ③ 입찰공고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제안서 접수
 - ④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결과 기술성평가 반영
- 분리발주되는 SW별로 각각 입찰
 - 입찰방식은 분리발주되는 SW별로 각각 입찰
 - 또는 하나의 입찰공고로 여러 SW를 기재하여 입찰(이 경우 SW별로 각각 추정금액 기재 및 제안서 별도 접수. 합동 평가 가능, 계약 별도 체결)

※ SW 입찰관련 조달청 질의 답변(07.3.22) (접수번호 34771)

질의) 발주기관은 각각 다른 여러 개의 SW를 하나의 입찰공고로 하되. 예정가격 결정. 입찰서 평가.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을 SW별로 각각 별개로 하는 것에 대해

답변) 이는 입찰공고 및 절차에 대한 편의적인 방법으로 국가계약법령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도입 목적물의 특성과 규격, 예산상황, 수요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

※ 다수의 분리발주 대상 SW를 하나로 묶어 단일금액으로 일괄발주하여 1개 공급자를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적용 사업이 아님

- 평가

• 발주기관은 경쟁입찰로 분리발주 대상 SW를 구매하려는 경우 BMT를 직접 또는 시험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그 평가시험의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협상 및 계약체결

- 발주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공급자와 계약에 관한 기술 및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계약 체결
 - ① 발주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공급자를 확정하고, 확정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슈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 ② 발주기관은 계약 확정 통보를 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
 - ③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서, 공급자는 산출내역서 ·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상호 검토하고 이를 확정
- SW공급자와 시스템통합사업자간의 책임관계 명확화
 - 발주기관은 상호협의회의 구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계약 서류에 "상호 협약서"(붙임 5),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붙임 6)를 시스템통합사업자와 분리발주 SW 공급자를 선정 후, 각 1부씩 추가 제출토록 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 상기 서류는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을 가감하여 작성 가능

▶ 발주 단계별 포함 사항

발주 단계	평가항목			
제안 요청	 사업 추진 체계: 상호협의회 구성 사업 주체별 책임 및 역할 명시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작성 			
계약/인수	• 상호 협약서 제출 •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사업 수행	사업 수행 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준수 여부 확인			

- SW공급자에게는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시스템통합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의무 부과
 - -SW공급자는 시스템 통합·검수과정에서 시스템통합사업자가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
- SW사업수행 불이행에 따른 조치 실시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체 제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시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등 필요한 조치를 명시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필요한 조치를 명시
 -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등 필요한 조치를 명시

- 계약변경

- 발주기관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업의 범위 등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계약조건의 변경사항에 대해 공급자와 협의하여 변경
- 계약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계획 · 비용 · 품질 · 일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지를 조사하고 필요 한 사항을 조치
 - ① 발주기관은 발주기관이 제기하는 변경요청을 포함하여 공급자의 계약변경요청과 관련된 사유를 검토
 - ② 발주기관은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 ③ 계약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포함하여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관련 문서들도 변경
- 과업변경 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및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낙찰차액을 이용하여 추가과업 을 수행하는 경우 기재부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함
 - ※ 관련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0. 정보화 관련 예산 (4) 정보화예산 이 · 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 ※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참조

2.3.2 조달청 종합쇼핑몰 통한 공급자 선정

• 발주기관은 도입하고자 하는 분리발주대상 SW가 조달청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록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요청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3조(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2.3.3 수의계약을 통한 공급자 선정

• 도입하고자 하는 분리발주 대상 SW의 공급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자 선정

2.3.4 GS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공급자 선정

- 도입하고자 하는 분리발주 대상 SW가 중소SW기업의 제품으로써 GS인증을 획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자 선정
- GS 우선구매제도 절차
 - (수요기관과 중소SW기업간 사전협의 후)중소SW기업은 지방중소기업청에 구매의사문의를 하고, 지방중소기업청은 수요기관의 결과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추진
- ※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우선구매를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2.3.5 SW 분리발주 계약정보 등록

• 발주기관은 분리발주와 관련된 통합(본)사업과 분리발주(상용SW 도입)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또는 계약 변경 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에 등록 해야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3조의2(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의 공개 등) ① 법 제20조제6항에서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소프트웨어 제품명
 - 2. 수량 및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및 계약자명
 - 4. 직접 계약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명 및 총 사업규모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5조(분리발주 계약정보 등록)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소프트웨어산업 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2.4 사업관리 단계

발주기관은 공급자 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 사업수행계획서의 「합동검토」 및「감리」 필요 시 「검증」 및 「확인」 프로세스에 따라 계약 이행점검 · 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 발주기관은 공급자에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하고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
 - 공급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은 발주기관이 담당하며,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 시 공급자의 지원을 받음
 - ① 발주기관은 계약이행과정으로 공급자에게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
 - ② 발주기관은 계약 시 공급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 · 승인
 - 사업수행계획서는 공급자가 SW사업 시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서. 계약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보장해야 함
 - ③ 사업수행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공급자와 상호 검토를 거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고 승인

- 공급자 계약이행 점검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합동검토」 및 「감리」 필요 시 「검증」 및 「확인」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공급자의 활동을 점검
 - 공급자 계약이행 점검은 발주기관이 담당하고, 감리·검증 및 확인을 발주기관이 수행하면서 합동검토에도 참여하며, 공급자는 합동검토를 주관하고 감리·검증 및 확인에 참여
 - ① 발주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초로 공급자와 계약이행을 위한 점검방안을 수립
 - ② 발주기관은 주요 산출물 완료시점 및 검토회의를 주요 점검 및 확인 일정으로 정함
 - ③ 주요 점검 및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이를 조치하며 필요시 일정 등을 조정

※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발주기관 및 사업자간 체결한 역할분담표에 따라 계약 이행과정에서 하지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처리함이 원칙
-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주도하여 대응하되.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참여한 SW공급자와 함께 해결
- 이 경우.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에게 하지발생에 따른 대응을 동시에 요청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상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서상의 제재조항을 근거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조치

- 공급자와의 협력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추후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함
 - ① 발주기관은 공급자와 협력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 및 협의
 - ② 상호협력 방법을 이용하여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
 - ③ 발주기관은 사업관리상에 발생되는 제반사항을 공급자에게 알리고 대처
 - ④ 발주기관은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책 마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와 위험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공급자 간 협력 보장방안 수립
- 발주기관은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공급자의 업무 수행 및 문제점 처리에 대해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공급자에게 제공

2.5 인수 단계

발주기관은 사업계획서에서 정의한 「인수전략」 작업에 따라 인수준비 · 인수계획 수립 · 산출물 등 사업 성과물을 인수하고 사업 종료

– 인수준비

- 발주기관은 「발주준비」 단계에서 정의한 인수전략 및 기준에 따라 인수를 위한 준비 수행
 - 인수준비는 발주기관이 담당하며 공급자가 지원
 - ① 발주기관은 사전에 수립된 인수전략을 검토하고 인수계획을 수립
 - ②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상에 명시된 산출물의 종류와 산출물의 유형을 정리
 - ③ 각 산출물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
 - ④ 인수계획에 따라 인수를 추진하며 필요 시 인수위원회나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 검수 및 인수시험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납품하는 SW등을 인수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
 - ① 인수계획서에 따라 인수에 참여하는 요워들에게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필요한 교육 실시
 - ② 산출물별로 정해진 인수담당요원의 책임 하에 산출물 별로 검사 및 시험 실시
 - ③ 산출물별 검사 및 시험 결과를 문서로 정리
 - ④ 부적합 판정된 산출물이나 결과에 대해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별도의 검사 및 시험 절차에 의거 처리
- 분리발주 SW의 검수방법
 - SW공급자가 시스템통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된 SW는 전체 SW사업과 동시에 검수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 다만, 공급되는 SW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기성고 인정 시) 시스템통합사업 종료시기와 관계없이 공급된 SW 검수 추진 가능

- 인수 및 사업 종료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납품하는 모든 인도물이 계약서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검사하고 충족 시 사업을 종료

- ① 인수한 산출물 품목과 인수계획서를 대조하고 확인
- ② 인수한 모든 산출물을 검사하고 시험결과 확인
- ③ 인수계획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수절차가 수행되었는 지 확인
- ④ 발주기관과 공급자 상호간 사업종료에 합의하고 사업종료보고서와 함께 문서화

※ 유의사항

- 전체 SW사업 검수 불합격 시 발주기관은 불합격 책임이 있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금액(기성고 제외)기준으로 지체 상금 부과
- 검수결과, 불합격 원인의 제공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이행과정에서의 회의록·감리 결과·합동 사전 테스트 등 입증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문서화

2.6 유지관리 단계

발주기관은 사용자의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유지관리계획 수립, 유지관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수정사항 분석 및 반영, 유지관리 결과 검토

현재의 운영환경에서 새로운 운영환경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전과 전체 수명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시스템 폐기와 관련된 작업포함)

- 분리발주 SW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및 기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명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5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
- SW공급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
 - 분리발주 SW의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약은 공급되는 SW단위별로 추진하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를 적용하여 적정대가 산정
- 분리발주 SW의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약은 공급되는 SW단위별로 추진하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름 적용하여 적정대가 산정
- SW 유지관리는 인수한 시점이 기준이며, 인수한 직후부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발주기관의 유지 · 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안정적인 하자 · 유지관리 확보

- 발주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등을 위해 SW공급자에게「저작권법」제10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한 SW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의 임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가능
 -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SW 등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경우에는 총 배점한도 이외에 3점 이내의 가점 부여 가능(근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4조제4항

※ SW 임치제

- SW 소스코드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여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권자에 게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까지도 보호하는 제도
- 임치물의 교부조건 발생 시 사용기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기업은 임치계약서상 개발자 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하고 있음
- ▷ 저작권법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붙임]

- 1. SW 품목 분류체계
- 2. SW 분리발주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영사항
- 3. SW 분리발주 사업에서의 (BMT) 절차 및 방법
- 4. 제안요청서(일괄발주/분리발주)
- 5. 상호협약서 (예시)
- 6.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예시)
- 7.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8. 제외사유 검토요청 체크리스트 (조달청 서식)
- 9.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조달청 서식)
- 10.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 의결서 및 결과서 (조달청 서식)
- 11.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 1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서
- 13.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14.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붙임1]

SW 품목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 명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 및 운영을 도맡아 관리하는 기본 소프트웨어 - WINDOWS 계열, Unix 계열, Linux 계열, MOS 계열, 기타 운영체계SW		
		통신 SW	 컴퓨터 상호간에 접속하여 두개의 장치 사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SW	– 사용자가 컴퓨터를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시스템 SW	시스템관리 SW	- 네트웍을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 여러 개의 네트웍이 묶인 대규모의 시스템에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관리, 미들웨어 등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		
		정보보호 SW	 보안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컴퓨터 네트웍 환경에서 외부 네트웍으로 부터의 내부 네트웍을 보호하고 침입을 차단하고 감시하며 의도적인 보안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지원을 불러오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가운데 놓인 중간자		
패키지 SW	개발용 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	-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컴퓨터의 명령어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프로그래머가 작성하 프로그래밍 작업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예) 기계어, 어셈블리언어, C++ 등		
		프로그램 및 콘텐츠개발용 도구	- 개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및 각종 오락게임, 사회, 생활,문화, 기업 및 기관홍보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개발에 지원되는 도구		
		프로젝트 관리용 SW	 프로젝트 추진이나 개발시 발생하는 모든 제반요소를 프로젝트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프로젝트 추진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예산, 품질, 납기 등을 보장받아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DBMS	-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 보관하기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 RDBMS, ODBMS, ORDBMS		
	응용 SW	기업관리 SW	 기업의 기간업무를 통합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업관리소프트웨어, ERP소프트웨어,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고객관계관리(CRM) 소프트웨어 		
		과학용 SW	- 과학적 데이터의 처리나 과학적 문제(매우 빠른 연산, 실수연산 명령, 큰 기억장치)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용 SW	 모든 분야의 생활적 활동의 전반인 전체 산업을 구성하는 각 부문 즉 각 업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활용

[붙임2]

SW 분리발주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영사항

가. 제안안내서 작성

◎ : 일반적인 SW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지침 주요내용(「SW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SW 분리발주관련 제안요청서 작성 시 고려사항

구 분		작성방법 및 주요내용			
	분리발주되는 SW에 다	배한 입찰방식, 계약조건, 제안서 평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다.			
	1,1 입찰, 낙찰 방식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안요청서를 공고한다. ★ 분리발주되는 SW는 SW별로 각각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 낙찰방식은 기술우위 SW의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1.제안서 평가 · 선정방안	1.2 제안서 평가 · 선정	 ◎ 발주기관은 사전에 수립된 제안 요구사항, 발주계획 및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 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공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한다. ★ 분리발주되는 SW공급자의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SW 기술성 평가기준」의 상용SW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활용한다.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배점한도를 각각 90:10 등 기술능력 중심으로 평가한다. ★ 발주기관은 SW기술성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벤치마크테스트(이하 'BMT')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BMT 실시여부, 실시주체, 설명회 개최, 비용부담 등에 대해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다. ★ 발주기관은 BMT를 실시할 경우 평가 요소는 「SW기술성평가기준」의 상용SW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1,3 제안서 작성 방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분리발주 SW에 대한 제안서 작성목차 등 제안자들이 제안서를 쉽게 작성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SW공급자와 계약서 적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학성 시 SW사업에 필요한 상호 협력 등 책임과 역할,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 사전에 방지한다.			
2. 계약 조건	21 유의사항	 ◎ 발주기관은 입찰을 위한 제반 조건과 기술적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계약조건으로 정의한다. ★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 및 SW공급자와의 계약 체결 시 각각의 사업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각 사업범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요청한다. (i)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전에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가 전체 사업계획, 전체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시스템 운용환경, 분리발주되는 SW의 상세명세 등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작성방법 및 주요내용
2. 계약 조건	21 유의사항	 (ii)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분리발주된 SW를 이용한 시스템통합을 담당하는 만큼, 시스템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한다. 다만 분리발주된 SW가 문제인 경우에는 SW 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한다. * 붙임 6.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예시) 참조 (iii) SW공급자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 검수과정 등에 필요한 SW기술지원 등 시스템통합 사업자에 대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iv) 기타 정보시스템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 SW공급자에게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시스템통합, 검수 과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이행을 보장하는 SW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 또는 SW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3. 참고사항	3.1 참고사항	 ★ 사업 관리 및 검수에 있어 발주기관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따라 시스템통합시업자, SW공급자가 참여하여 프로세스 표준화, 합동검토 등을 통해 SW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발주기관은 SW사업 수행 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발주기관은 하자 발생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에게 동시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을 기재한다. ★ 발주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하자ㆍ유지관리 등을 위해 SW공급자에게 「저작권법」 제101조의 구정에 의한 문리발주한 SW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의 임치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SW개발자의 실명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기타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관련 고시 등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관련 고시 등 규정, 「육기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등이 적용됨을 명시한다.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발주할 경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의 제외사유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나. 기술제안요청서 작성

구	분	작성방법 및 주요내용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전체 SW사업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여 분리발주되는 SW의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1.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발주관리 대상 업무의 중요성, 대내외적 환경여건의 변화, 복잡 다양해지는 사용자 서비스 요구수준의 고도화 등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한다.				
4 H어케O	1,2 서비스 내용	◎ 사업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 및 프로세스(업무처리 절차) 개선 내용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1.사업개요	1.3 시업 범위	◎ 본 사업에서 개발될 응용 SW의 개발내용 및 범위를 간략히 기술하고, 이와 관련된 SW,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 등 제반 시스템 구축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1.4 기대효과	◎ 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발생되는 프로세스 개선 및 비용절감 효과 등 제반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전체 SW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을 소개하여 분리발주되는 SW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2.1 업무 현황	 ◎ 전체적인 업무구성도(전체업무 개요를 도식화)를 작성 시 관련기관□조직, 서비스 대상자등을 표시하고, 본 사업의 정보교환 및 상호간 연계성을 도식화한다. ◎ 사업 내에 포함된 업무명, 업무개요 및 기능, 수행조직, 관련기관, 정보화 여부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 업무와 관련된 수행조직은 조직도를 참조하여 도식화하고 각 조직별 역할 기술한다. 정보 공동활용 현황은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한다. 				
2. 현황과 문제점	2.2 정보화 현황	 ◎ 현행시스템 구성도 작성 시 최종사용자, 통신망, 주전산기, SW,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전체의 시스템을 도식화(통신화선 속도 명시)한다. ◎ 하드웨어, SW, 데이터베이스, 통신망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모델, 수량, 용도(주요 기능), 보유형태, 구입 시기, 설치장소 등 정보화 현황을 상세히 기술한다. ◎ 상기 언급하지 않은 자원 중 본 사업에서 활용될 장비의 품명, 주요기능, 특징 및 용도 등을 기술한다. 				
	2.3 문제점과 개선방향	◎ 업무 및 정보화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기술한다.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전체 SW사업의 추진방향을 소개하여 분리발주되는 SW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3.1 추진목표	◎ 사업 추진에 대한 최종 목표 및 단계별 추진목표를 제시한다.				
3.사업 추진방안	3.2 추진전략	◎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한다. ◎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 정책적 측면, 표준화 측면, 법ㆍ제도적 측면 등에서 구체적인				

구 분		작성방법 및 주요내용			
		추진방향과 정보기술 활용전략, 사업관리 전략, 표준화 전략, 개발시스템의 확산 전략, 관련기관간 협조 등을 기술한다.			
	3.3 추진체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발주기관, 사업자 및 관련기관 등)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도식화하고, 담당업무 및 기능을 상세히 기술한다.			
	3.3 추진체계	◎ 사업추진 시 주요 일정을 월별로 제시. 사업의 총 수행기간, 계약기간, 추진단계, 일정별 주요 이벤트(착수 및 종료보고회, 워크샵, 법ㆍ제도 개정, 서비스 개통일, 공청회 등) 등을 표시한다.			
	분리발주되는 SW에 다	H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한다.			
	4.1 제안요청 개요	◎ 분리발주되는 SW에 대한 제안요청내용을 다음과 기술한다. ★ 본 사업에서 필요한 전체 SW 리스트를 '도입방법별 SW품목 리스트'를 일괄발주 또는 분리발주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제안요청서는 시스템 및 SW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SW공급자와 시스템 통합사업자를 위해 각각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발주할 경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의 제외사유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4.제안요청 내용	4.2 목표시스템 구성도	◎ 목표시스템에서 운용될 SW의 개발범위 및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SW의 운용에 필요 구성요건을 제시한다. 대상업무의 주요 내용을 업무구분, 주요기능, 세부 설명, 비고 등으 구분하여 표시한다.			
	4.3 SW제안 내역과 구성요건	 ◎ 목표시스템에서 운용될 SW의 적용범위 및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SW의 운용에 필요한 구성요건을 제시한다. ★ SW공급자에 대한 제안요청서에는 SW설치로 인해 타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등에 환경설정을 강제하거나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방안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에 대한 제안요청서에는 분리발주로 구매하고자 하는 SW의 제품명, 기능, 기존 또는 구축예정인 SW사업의 시스템 운용환경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4.4 도입대상 장비 내역과 구성요건	© 하드웨어 도입은 SW제안자의 이해를 위해 참고사항으로 목표시스템의 하드웨어, SW 및 통신망 등의 구성도를 제시한다.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도입대상 하드웨어, SW, 통신망 등의 내역(품목, 규격, 수량, 용도 등), 필수요구사항(기능요건) 및 구성요건을 제시한다.			
	4.5 표준화 요건	◎ 목표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분리발주되는 SW의 표준화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준용			
	4.6 교육지원 요건	◎SW의 사용자, 관리자 등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7 기술지원 요건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한다.			
	4.8 하자 · 유지 관리요건	◎SW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9 기타	◎ 상기 제시되지 않은 기타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참고 1: 제안서 목차 (예시)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한국정보화진흥원」 분리발주용 제안요청서 세부작성지침을 차용하여 예시로 작성

작 성 목 차	○ 전시성구시면서답시답된다당한─먼국성모와전등면」 문다글구동 세인표성시 제구작성시점을 사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해당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Ⅱ. 제안 개요	 제안시는 해당 시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제안시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제안시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제안시는 통합사업자와의 협력방안 등 사업 수행방안을 제시 	
Ⅲ. 제안 소프트웨어 일반		
1. 기능성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능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시된 기능 요구규격이 있는 경우 대비하여 작성 본 사업 또는 기존 활용 중인 HW/SW와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 표준이 있는 경우, 국내외 표준의 준수 여부 기재 접근통제/감시 등과 관련된 보안성 확보 여부 등 	※SW 분리발주 평가표를 참조 하여 상세 내용 기술
2. 사용성	 사용자가 SW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 인터페이스, 메시지 등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기술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오류 방지/복구 용이성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온라인 도움말 등 기능학습 용이성 확보 여부 	
3. 이식성	SW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상위 버전으로 SW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던 기능과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SW 제품이 공통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 환경에서 다른 HW/SW/NW 제품과 같이 동작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 제시	
4. 효율성	• SW 제품의 평균 반응시간을 제시 • 자원(메모리/디스크/CPU/입출력장치 등)의 사용정도를 제시 • 데이터의 주고받는 기능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 전송 효율성 제시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5. 유지보수성	SW에 대한 오류의 증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의 지원 여부 제품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SW의 환경 및 기능이 변경될 수 있는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지 제시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SW의 변경 또는 환경설정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지 제시 SW 제품을 스스로 시험할 수 있는 내장형 시험 기능 제시 SW의 백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백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지를 제시	
6. 신뢰성	SW 버전별 발견된 결함 및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실적 제시 SW 제품 사용 시 사용자의 오조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SW의 기능 제시 SW 제품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그 오류로 인한 데이터 회복에 관한 기능 제시	
♡. 공급자 지원부문		
1. 운용지원	 제품공급 일정 및 능력 제시 패키징 수준 제시 SW 사용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상의 불편 및 사용불능 상황 등에 대처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및 지원능력 제시 제안요청서에서 명시적으로 요청된 경우, 전담 지원조직, 담당자 등을 명시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 등을 제시 오류복구/문제해결 정책 제시 Help Desk, 응급복구, 상시 지원인력 등 사용자 증가, 하드웨어 증설 등 구매자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장 사용 가능성과 기능요구사항의 빠른 반영 및 우수 신기술을 적용하는 기능개선 계획 등 제품 자체의 기능향상을 위한 확장성 제시 해당 SW에 대한 SW임치제도 수용 여부를 명시 	
2. 교육훈련 지원	사용자/관리자에 대한 교육 지원계획 제시 - 일시, 장소, 내용, 방법, 교재 등 교육훈련 전담조직, 전담인원, 위탁기관 등 제시	
3. 제품 신뢰도	• GS 인증 등 품질인증 획득, 지적재산권,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 제시	
4. 직접생산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시 등	
vi, 기타사항 	• 기타 제안에 필요한 사항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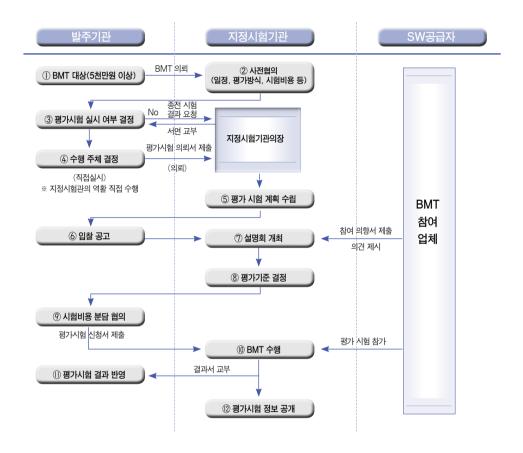
참고 2: 「SW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별표 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 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능구현 완전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구현 정확성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능성	상호 운용 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준수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한다.		
	기능학습 용이성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기능성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0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환경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식성	설치제거 용이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하위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효율성	반응시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자원사용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처리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문제진단/해결 지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유지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보수성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백업/복구 용이성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신뢰성	장애복구 용이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한다.		
선되장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데이터 회복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7한다.		
	유지관리 지원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인력, 유지관리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센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교육훈련 지원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공급업체	제품 신뢰도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지원	직접생산 여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저작권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생산을 증명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붙임3]

SW분리발주 사업에서의 BMT 절차 및 방법



- ① 분리발주 대상 SW제품 중에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SW제품을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된 SW제품 구매는 제외)
- ② 국가기관의 장은 지정시험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 평가시험 실시 여부 및 수행주체
 - SW소프트웨어 품목 및 평가시험 일정
 - 기능평가 또는 성능평가 등 평가방식
 - 평가시험에 소요되는 시험비용
 - 제안요청서의 평가시험 안내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평가시험 실시할지 아니면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할지 여부 결정
- ④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할지 아니면 발주기관이 직접 평가시험을 실시할지 여부 결정
- ⑤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세부 평가기준(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평가시험 방법·절차·기준 등) 평가시험 계획 수립
- ⑥ 국가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의 실시 또는 종전 시험결과의 활용 여부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
- ⑦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설명회 개최 할 수 있으며 BMT에 참여하고자 하는 SW공급자는 평가시험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붙임 11 서식)를 제출함 (평가시험의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입찰 공고 시 참가제한을 명시)
- ⑧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SW공급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시험 기준을 정함
- ⑨ 시험비용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SW공급자가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하며 일부 미래부가 지원
- ⑩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수행한 후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서 (붙임 12 서식)를 국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교부함
- ⑪ 국가기관의 장은 평가시험 결과를 SW기술성평가 시 반영
-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 결과의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

[붙임4] 제안요청서 예시

제안요청서 (일괄발주 사업 예시)

• 사업명: EDMS 시스템 기능 개선사업

〈생략〉

• 도입 방법별 SW품목 리스트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수랑	도입 방법	도입 시기
1	WAS	1식	SW 분리발주 (입찰공고)	6월 예정
2	DBMS	4식	SW 분리발주 (입찰공고)	6월 예정
3	PKI Toolkit	6식	SW 분리발주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6월 예정
4	통합모니터링 솔루션	1식	일괄발주 (5천만원 미만)	3월
5	EDMS	2식	일괄발주 (분리발주 제외사유)	3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른 분리발주 적용 사업으로써, 낙찰자로 선정된 일괄발주 사업자는 분리발주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분리발주 SW 도입 시점에 상호협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분리발주 대상 SW인 WAS, DBMS, PKI Toolkit은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발주를 통해 도입되므로 본 사업금액에 해당 SW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생략〉

제안요청서 (분리발주 사업 예시)

■ 사업개요

• 사업명: EDMS 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을 위한 DBMS 분리발주 사업

• 사업금액: 120,000천만원

〈생략〉

※ 본 사업은 OO년 OO월에 발주한 OOOO 일괄발주 사업에서 분리된 DBMS를 도입하는 분리발주 사업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분리발주 사업자는 일괄발주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상호협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생략〉

■ 사업자 선정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실시 계획
- BMT는 지정시험기관인 OOO에서 실시하며 BMT 계획 설명회는 2000,00,00,에 OOOO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임 (세부적인 사항은 지정시험기관인 OOO의 OOO에게 문의(Tel: OO-OOO-OOOO) 바람)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BMT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또한 BMT 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자는 평가시험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BMT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 BMT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수가 OO기업 이상이거나 확보한 BMT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에 협의를 통해 BMT 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음

■ 별첨 : 상호협약서 및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각 1부

[붙임5]

상호협약서 (예시)

상호협약서

△△△주식회사(이하 "시스템통합사업자")와 (이하 "SW공급자")는 □□□부 "OOO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약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일괄발주사업명: OOO 사업분리발주사업명: OOO 사업

제1조 (계약의 목적)

본건 사업은 발주자에 의하여 OO개의 별도사업으로 분리발주된 사업인바, 본 계약의 목적은 본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통합업무를 성공적으로 위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상호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역할 및 책임)

- (1)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은 별첨의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와 같다.
- (2)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각각 별첨에 명시된 역할 및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며, 별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범위 내에서 상호

제3조 (지원 및 협조)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역할 수행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사업범위 내의 시스템통합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SW공급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하는 내용 및 수준의 제반 지원 및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SW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의 내용 및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면책)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가 설치/납품하는 SW의 기능, 성능, 품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하자 및 사업지체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사업자는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정사항 및 통합업무 관련 요구사항 처리 등)

- (1) 시스템통합사업자는 SW공급자에게 품질, 공정, 일정 기타 통합업무 관련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SW공급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 적기 처리하여야 한다
- (2) SW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사항 치유 후 그 처리 결과를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보고하고, 시스템 통합사업자는 조치내용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SW공급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 (3) 본 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의 사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시스템통합 사업자의 시정요청 또는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회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쟁 및 조정)

- (1)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따른다.
- (2)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발주자, 시스템통합 사업자, SW공급자 가 참여하는 상호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3)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 별첨: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20XX. . .

지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회사명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대표이사 직인

※ 상기 상호협약서 서식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가능

[붙임6]「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한국정보화진흥원」산출내역서(분리발주용) 참조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예시)

단계	임무	활동	통합사업자	SW공급자
준비	조직 구성			
	일정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			
		해당 업무 인수 인계		
	현황자료 수집/분석	SW 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SW 현황자료 이전자료 확보		
	현행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RFP 요구 사항 대비 /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현황	운영절차 내재화 지원			
분석	고객 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시스템 설계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설계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분리발주 SW 설치 계획 수립		
	Thu 1471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장비 설정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시스템 구축	단위 시스템	분리발주 SW 기능 테스트		
丁玉	테스트	분리발주 SW 아키텍쳐 테스트		
	시스템간 연동 구현			
		분리발주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OC 511 - A-11	연동 테스트 수행		
테스트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전체 시운전 시행			
		분리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검수 및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분리 SW 운영자 매뉴얼		
	024-1-70	분리 SW외 운영자 교육		
	운영자 교육	분리 SW 운영자 교육		
종료	11 4 54 74 4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	시스템 검수	분리 SW 검수		
	종료 보고회	1		
			1	

■ 사례 3

				책임소재	
단계	TASK	Activity	HW 사업자	SW 사업자	
	조직 구성		0		
준비	일정계획 수립		0		
	착수 보고회		0		
		해당 업무 인수 인계	0		
	현황자료 수집/분석	SW 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0		
		SW 현황자료 이전자료 확보	0		
	현행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RFP 요구 사항 대비 /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0	
	운영절차 내재화 지원		0		
문식	고객 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0	0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0	0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0	0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0		
설계	시스템 설계		0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0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0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0		
		분리발주 SW 설치 계획 수립		0	
	자비 서저	시스템 환경 설정	0		
시人테	6 ¹ 1 26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단위 시스템 분리발주 SW 기능 테스트			0	
1 -5	테스트	분리발주 SW 아키텍쳐 테스트		0	
준비 : : : : : : : : : : : : : : : : : : :	시스템간 연동 구현			0	
		분리발주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0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0		
준비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0		
	여도 미사트 스해	연동 테스트 수행		0	
테스트	한승 데스트 구성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0	
		통합 테스트 수행	0		
	동압 네스트 수앵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0		
	전체 시운전 시행		0		
	으여 미 코티 레드스 포니	분리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0	
	군영 및 판리 배뉴일 작성	분리 SW 운영자 매뉴얼		0	
검수	으여자 교으	분리 SW외 운영자 교육		0	
	ᆫCON 뉴션	분리 SW 운영자 교육		0	
	시시템 거스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0		
	시스템 검수 분리 SW 검수			0	
	종료 보고회		0		

[붙임 7]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별지 서식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제외 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붙임 8**] (조달청 서식)

제외사유 검토요청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Check
1. 나라장터 쇼핑몰(shopping.g2b.go,kr)에 등록된 제품인가? ▶ 미등록제품이면 해당 업체에게 쇼핑몰에 등록하도록 권유하여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햄(업체 등록요청 후 30일 이내 쇼핑몰 등록 가능)	
1.1 쇼핑몰 등록 제품으로 예산 내에 구매 가능한가? ▶ 쇼핑몰 등록업체로부터 견적서 등 자료를 받아 제출	
1.2 쇼핑몰 제품으로 기능구현이 가능한가? ▶ 쇼핑몰 등록업체로부터 기능 충족이 어려움을 확인받아 제출 * 제3자단가계약 상용SW업체는 시스템 구축 시 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해야함(계약특수조건)	
2.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가? ▶ 사업규모 미 충족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쇼핑몰 등록 제품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사업규모와 관계없음	
2.1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이상인가? ▶ 1개 혹은 동일 소프트웨어 다량 구매로 5천만원 이상이면 분리발주 대상이며, 5천만원 미만이면 대상 아님	
3.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검토하였는가? ▶ GS, CC, 행정업무용 선정SW, NEP, NET 인증 제품에 대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www.swit.or.kr)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능이 있는지 검토한다.	
3.1 대상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가? ▶ 5천만원 미만일 경우 통합발주 가능하며 제외사유서 제출 필요 없음(견적서 제출)	
3.2 대상 소프트웨어가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및 기능을 충족하는가? ▶ 검토 제품의 업체로부터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사유를 받아 제출한다.	
4. 적정 사업기간을 검토하였는가?	
4.1 개발기간과 계약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하였는가?	

(**붙임 9**)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2호의2 서식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쇼핑몰등록제품명)	제외 사유	종합쇼핑몰 등록유무	도입 시기
1				
2				
3				
4				
5				
6				
7				
8				
9				
10				

[**붙임 10**] (조달청 서식)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 의결서

수요기관의 분리발주 제외사유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합니다.

201 . . .

소속	직급	성명	확인

붙임: 1.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 결과서 1부

2.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1부. 끝.

(조달청 서식)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 결과서

수요기관	0000			기관담	당				
사 업 명	××××× 사업								
사업금액	000,000 원			의결번	호				
		금액				검	토결과		
구분	품명			대상		제외가능		제외	불가
. –				아님	비용 증가	일정 지연	통합 불가능	쇼핑몰 구매	분리 발주

[붙임 11]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사업 내용	공고명		공고번호		사업급액		
	평가시험 분야				부터 .	•	까지
업체	업체명(대표지	.)	(인)	생년월일(사업	[자등록번호)		
정보	주소						

당사는 「공고명」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190mm×268mm(백상지 80g/m²)

[붙임 1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_			
의뢰자	주소		(전화번호 :)			
	입찰공고 명							
평가	평가시험 분야		사업기간	부터까지				
시험	신청일자							
결과	평가시험 기간	부터까지						
	평가시험 결과		세부 평가시험 결과서 참조					
		^{년 월} 지정시험기관의		직인				
지정시험기관명				결과서 번호:				
주소 전화 :	, Fax :			페이지()/(총)				
	- 베브 귬기 시칭	경제 시 1 브						
첨부서류	- 세부 평가시험	걸파서 1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메뉴얼[개정판] • 71

190mm×268mm(백상지 80g/m²)

[붙임 13]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0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80호)」전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는 경우 세부적인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리발주 대상 사업)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분리발주 대상 사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총 사업 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①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는 제2조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제품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 3.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CC)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제품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 (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 제4조(분리발주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로 인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할 경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분리발주 계약정보 등록)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 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붙임 14]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3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3342호, 2015. 6. 22. 공포, 2016. 1. 1. 시행) 제 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 실시에 필요한 평가시험의 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시험 대상 등)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시험 대상' 이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소프트웨어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 한다)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 대상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의2제1항 및 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사전협의)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을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경우 사전공개 전에 지정시험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평가시험 실시 여부 및 수행주체
- 2. 소프트웨어 품목 및 평가시험 일정
- 3. 기능평가 또는 성능평가 등 평가방식
- 4. 평가시험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이하 "시험비용"이라 한다)
- 5. 제안요청서의 평가시험 안내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평가시험 실시의 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매 하는 경우 평가시험을 실시하거나 기존에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이하 "종전 시험결과"라 한다)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제품 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으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과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의 정보공개를 확인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종전 시험결과를 서면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실시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전 시험결과의 활용 여부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시험의 수행주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을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 규칙 제6조의3에 따라 평가시험 의뢰서를 서면으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평가시험 방법, 절차 및 기준을 직접 수립 하거나 이 지침에서 정한 방법,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평가기준의 수립)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 대상의 세부 평가기준이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표 2의 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등과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사항을 반영한 평가 시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을 말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지정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한 평가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입찰공고 기간 이내에 제2항의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소프트웨어 공급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평가시험에 필요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평가시험의 참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한하여 평가시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의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 서에 평가시험의 참가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험비용) ① 시험비용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비용 분담의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담비율을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하는 시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별표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시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평가시험의 수행)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평가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제7조에 따라 평가시험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평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평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시험 결과서의 교부)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시험 결과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전자무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시험비용을 분담 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평가시험 결과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시험 결과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시험의 결과 반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평가시험 결과서를 법 제13조의2제1항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제4조에 따라 반영하여 야 하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 결과를 반영할 경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 공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시험 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 결과의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 1. 사업명
 - 2. 소프트웨어품목
 - 3. 평가시험 환경
 - 4. 평가항목
- 제13조(종전 시험결과 활용 및 의견 수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할 경우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있는지의 여부
 - 2. 종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평가시험을 수행한 소프트웨어 공급자 중 평가시험을 다시 실시하려는자가 있는지의 여부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평가시험 실시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한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평가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4조(지정시험기관의 역할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평가시험 수행
 - 2. 소프트웨어 분야별 품질성능 평가모델 개발
 - 3. 기타 평가시험과 관련한 세부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시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 평가시험 신청 및 수행 현황
 - 2. 평가시험 결과
 - 3. 기타 지정시험기관 관리 \ 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메뉴얼(개정판)

발행인 : 윤종록

발행처: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87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

TEL: 043)931-5353 FAX: 043)931-5329

인쇄처 : 다음복지회

ISBN 978-89-6108-349-2

- 본 매뉴얼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매뉴얼」"이라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정보센터▶SW제도자료실
- 본 매뉴얼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제도적용팀 /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 전화: 043-931-5353 / 이메일: swhelp@nipa.kr